㈜대유에이피 제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고(일반공모)

상법 제516조의2에 의거 2020년 4월 2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의결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대유에이피
2.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대유에이피 제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종류 :
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다.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형 신주인수권부사채
4.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100%(할인율0.00%)로 한다.
6.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7.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2.00%(이하 "표면이율" 이라 한다)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4.00%로 한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가. 만기상환: 만기(2023년 05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5월 15일에 원금의 106.341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1년 05월 15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4.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년 03월 16일	2021년 04월 15일	2021년 05월 15일	102.0302%
2차	2021년 06월 16일	2021년 07월 16일	2021년 08월 15일	102.5505%
3차	2021년 09월 16일	2021년 10월 18일	2021년 11월 15일	103.0760%
4차	2021년 12월 17일	2022년 01월 17일	2022년 02월 15일	103.6067%
5차	2022년 03월 16일	2022년 04월 15일	2022년 05월 15일	104.1428%
6차	2022년 06월 16일	2022년 07월 18일	2022년 08월 15일	104.6842%
7차	2022년 09월 16일	2022년 10월 17일	2022년 11월 15일	105.2311%
8차	2022년 12월 17일	2023년 01월 16일	2023년 02월 15일	105.7834%

1)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하나은행 평촌역지점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8항 나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수익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0년 08월 15일, 2020년 11월 15일, 2021년 02월 15일, 2021년 05월 15일,
2021년 08월 15일, 2021년 11월 15일, 2022년 02월 15일, 2022년 05월 15일,
2022년 08월 15일, 2022년 11월 15일, 2023년 02월 15일, 2023년 05월 15일

10. 연체이율 : 본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각 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또는 조기상환기일을 말하며, 각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동 연체대출이율이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다.

11.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하나은행 평촌역지점

12.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13.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14. 사채관리회사: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15.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상환자금, 운영자금

16. 청약기간 : 2020년 05월 12일 ~ 2020년 05월 13일 (2영업일간)

17. 납입기일 : 2020년 05월 15일

18. 사채의 발행일 : 2020년 05월 15일

19. 사채의 만기일 : 2023년 05월 15일

2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에 대하여는 그 신주인수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사채 또는 실제 금액의 납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21.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가. 행사비율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2)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등록금액의 합산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전자등록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3) 본 항의 제 다호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4)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나. 행사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0년 04월 2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행사가액의 조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제1)목 및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

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20년 08월 15일, 2020년 11월 15일, 2021년 02월 15일, 2021년 05월 15일,
2021년 08월 15일, 2021년 11월 15일, 2022년 02월 15일, 2022년 05월 15일,
2022년 08월 15일, 2022년 11월 15일, 2023년 02월 15일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2.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20년 06월 15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3년 04월 15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24.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리기관)
25. 신주 교부 장소: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처리
26.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행사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행사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행사청구한다.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다.

27.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가.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본 사채"의 납입은행인 ㈜하나은행 평촌역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전자등록금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전자등록금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전자등록 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발행회사"의 정관에 따른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해당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대유에이피

대표이사 이 석 근